#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발의일자 : 2012년 3월 일
발 의 자: 이수경 의원외 3인

## 1. 개정이유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일부개정법률이 2012. 1.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(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)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

-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
- 의무휴업일수는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며, 성주전통시장(5일장)날인 2일, 17일로 한다. 다만, 명절(설, 추석)이 속한 월(月)은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.
- 한편으로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.(안 13조의2)

○ 다만, “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,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해

○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'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'로 하고, 제2조에 적용례를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"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것"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.'로 명시함.

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· 입법예고(2012. 3. 8 ~ 3. 15) : 의견 있음

| 의견제출자 | 제 출 의 견 | 조 치 여 부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롯데슈퍼 e-마트 | □ 의무휴무일 변경<br><br>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수를 매월 2일로 하되, 둘째, 넷째 일요일이 아닌 성주전통시장날로 고정 휴무가 아닌 자체 휴무로 변경 요망.<br><br>○ 명절 정기휴무는 탄력적으로 운영 | 반영( ✓ ) 미반영( )<br><br>○ 전통시장, 및 골목 상권을 살리는 좋은 취지인 것으로 검토되어 자체 휴무일은 아니나 전통시장날인 2일과 17일을 의무휴일로 지정<br><br>○ 명절이 속한 달은 1회에 한해서 의무휴무일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함. | |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#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군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,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은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.
2. 의무휴업일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, 성주전통시장(5일장)날인 2일, 17일로 한다. 다만, 명절(설, 추석)이 속한 월(月)은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.

부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“대규모점포 중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것”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<신 설> | 제13조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군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,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.<br>1. 영업시간 제한은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.<br>2. 의무휴업일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, 성주전통시장(5일장)날인 2일, 17일로 한다. 다만, 명절(설, 추석)이 속한 월(月)은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. |